

◎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2-224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2.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3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물량기준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kimsungchae@korea.kr](mailto: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3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kimsungchae@korea.kr](mailto: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http://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